



김병문 변호사
서울대 농대 농법학 강사

『인삼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내용

● 주진배경

- 우리나라 인삼산업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산업으로서, 지금도 ‘고려인삼’이라는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최근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현실임.
- 인삼은 비단 잠재력이 큰 농산물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과 미래지행적인 친환경적 이미지를 창출하는 우수한 신토불이 제품임을 고려하여, 이 산업을 전략화하여 집중 발전시킬수 있는 법적 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현행 “인삼산업법”의 내용과 한계

- 인삼산업법(1995. 12. 6. 법률 제5022호 제정, 1996. 7. 1. 시행)은 기존의「인삼사업법」을 폐지하

고 제정되어 최근 2003. 12. 11. 법률 제6998호로 개정되어 개정법이 2004. 7. 1.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삼경작 및 수확,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제4장 인삼류 등 제조, 제5장 검사 및 수출입등, 제6장 인삼류의 표기등, 제7장(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등 총 9장 33조로 되어 있음.(10개 조문은 삭제, 실제 조문은 23개조)
- 인삼산업법의 내용은 현행 인삼경작자 및 인삼류 제조업자 등이 경작, 제조, 유통 및 수출입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 및 규제에 관한 조항이 대부분임.

- 다만 제3조(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조항에서,
 - ① 농림부장관은 인삼 및 인삼류의 생산성향상·수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삼경작 및 수확,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제4장 인삼류 등 제조, 제5장 검사 및 수출입등, 제6장 인삼류의 표기등, 제7장(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등 총 9장 33조로 되어 있음.(10개 조문은 삭제, 실제 조문은 23개조)

출축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연구개발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종묘, 경작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적지조사 및 인삼제품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등), 제10조(계약경작등), 제11조(수매비축 및 출하조절등)등을 제외하고는 인삼산업 육성, 장려를 위한 적극적 조항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제3조는 인삼산업진흥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고, 강제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위 조항이 실질적인 규정력을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특히 인삼산업법 제정시 설치되었던 ‘인삼진흥기

금’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통합되면서(2000. 1. 21.), 사실상 인삼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독자적인 진흥을 위한 특별 재원이 누락되어 있는 바, 이는 인삼산업발전의 가장 큰 장애로 남게 되었음.

□ 따라서 인삼산업법의 전면 개정 또는 인삼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인삼농가들이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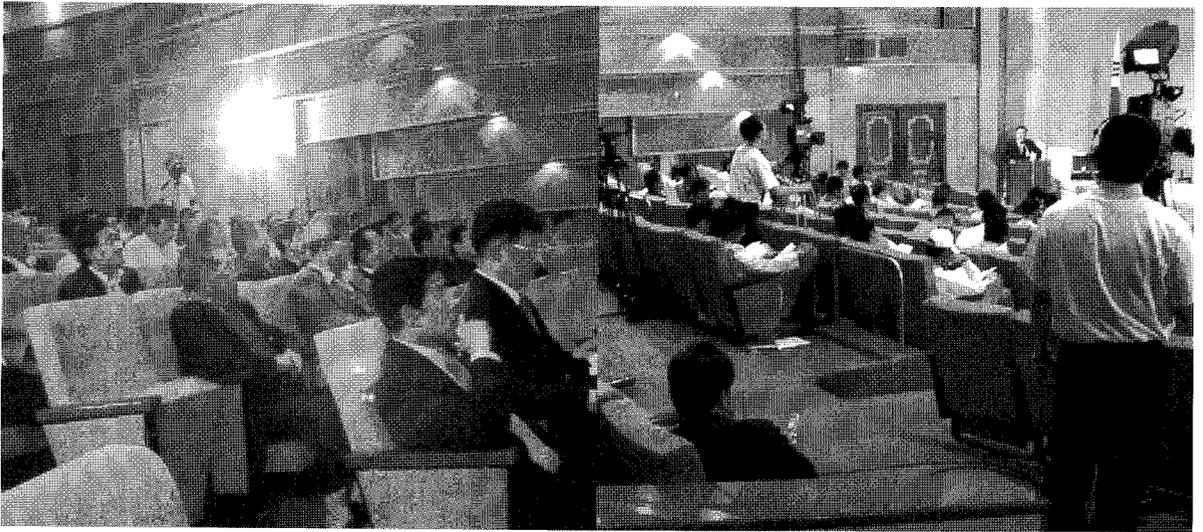
□ 여기에서는 그 입법형식이 현행 「인삼산업법」의 전면 개정이던, 인삼산업발전기본법, 인삼산업육성법, 또는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특별법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별도의 입법을 하던, 그 법률에 담겨야 할 내용을 편의상 “인삼산업발전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하고자 함.

3. 「인삼산업발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 구성

• 제1장 총칙

법 제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1장 총칙에는 인삼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지



방자치단체 및 인삼인 등의 책무등의 규정되어야 함.

4. 인삼산업발전기본법(안)

- 제2장 인삼산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인삼산업발전기본법을 만드는 취지에 따라 농림부를 포함한 국가가 인삼산업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인삼산업발전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수립 및 추진 절차와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
- 제3장 인삼산업의 발전과 전략화 방안
인삼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 인삼산업계와 인삼업관련 연구기관,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한다는 관점에서 인삼산업의 실태조사, 인삼전업농등의 육성, 전문정책연구기관의 설치, 인삼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품질인증, 인삼류의 생산, 유통 지원, 인삼산업의 세계화 방안, 인삼산업발전기금의 설치, 운용등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삼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고급화와 여타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선도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자산으로서, 이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전략품목으로 육성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삼산업”이라 함은 인삼 및 인삼류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삼인”이라 함은 인삼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삼전업농”이라 전문인삼농업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인삼농업 발전의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인삼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인삼경작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전략화”라 함은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자산으로서 인삼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이를 집중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인삼인의 책무)

인삼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인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인삼산업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책무를 진다.

• 제2장 인삼산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6조(인삼산업발전계획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인삼산업의 전략화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제7조(인삼산업발전기본계획)

- ① 농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매 5년 마다 인삼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인삼산업의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3. 인삼전업농을 포함한 인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생산자단체 육성방안
5.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6. 인삼류, 인삼류제품의 품질인증 방안
7. 인삼류, 인삼류제품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인삼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기본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자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인삼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④ 농림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결과에 관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삼산업발전위원회)

- ① 기본계획 및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삼산업발전기본법을 만드는 취지에 따라 농림부를 포함한 국가가 인삼산업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인삼산업발전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수립 및 추진 절차와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

- ③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 3. 기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⑤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인삼산업의 발전과 전략화 방안

제9조(인삼산업의 실태조사) 농림부장관은 인삼산업의 발전 및 전략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삼전업농의 육성)

- ① 농림부장관은 전문인삼농업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인삼농업 발전의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삼인을 인삼전업농으로 선정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② 인삼전업농의 선정,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생산자단체의 육성) 국가는 인삼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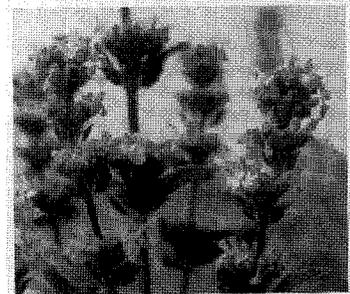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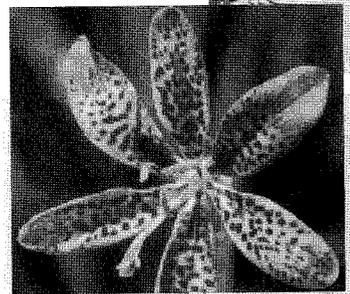
제12조(전문정책연구기관의 설치)

- ① 국가는 인삼산업의 육성 및 전략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한다.
- ② 전문정책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삼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농림부장관은 인삼산업의 발전 및 전략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인증)

- ① 농림부장관 및 인삼류제품관련행정기관의 장은 인삼산업 육성과 소비자보호, 수출증대를 위하여 인삼류와 인삼류제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품



질인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삼류의 생산, 유통 지원)

농림부장관은 인삼류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삼산업의 세계화) 국가는 한국인삼의 세계화를 위하여 한국인삼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정보수집, 홍보, 인력 및 자금지원 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인삼산업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 ① 국가는 기본 계획의 시행 및 인삼산업의 발전 및 전략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삼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한다.

- ② 인삼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터 시행한다. ㉞